국가자원안보 특별법



[시행 2025. 2. 7.] [법률 제20196호, 2024. 2. 6., 제정]

산업통상자원부 (자원안보정책과) 044-203-525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,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,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,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핵심자원"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석유, 천연가스, 석탄, 우라늄, 수소,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
 - 나. 「광업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(이하 "핵심광물"이라 한다)
 - 다. 재생에너지 설비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)의 소재・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・부품
- 2. "공급망"이란 핵심자원의 생산·수입·전환·가공·수송·저장·판매 등 국내외에서 핵심자원을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.
- 3. "자원안보"란 핵심자원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, 그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
- 4. "자원안보위기"란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,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.
- 5. "공급기반시설"이란 핵심자원을 생산・수입・전환・가공・수송・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6. "공급기관"이란 핵심자원을 생산・수입・전환・가공・수송・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・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,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.
- 7. "공공공급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기관을 말한다.
 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- 8. "민간공급기관"이란 공공공급기관 외의 공급기관을 말한다.
- 9. "재자원화"란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.
- 10. "수요기관"이란 핵심자원을 그 사업활동을 위하여 연료, 원료 또는 소재・부품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관,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안보시책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자원안보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 이 경우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공급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·수입·전환·가공·수송·저장·이용·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핵심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

제5조(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 · 시행하여야 하며,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2. 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
- 3.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
- 4. 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
- 5. 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
- 6. 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- 7. 공급기반시설의 개발・확충・유지・관리에 관한 사항
- 8.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
- 9. 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- 10. 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) ① 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·예산·자금·인력 등 규제·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·정책에 관한 사항
- 3.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・평가 및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・분석에 관한 사항
- 4. 핵심자원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
- 5. 제15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 및 제16조에 따른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
- 6. 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시책에 관한 사항
- 7.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・관리・해제에 관한 사항
- 8.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・관리・해제에 관한 사항
- 9.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0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- 11.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・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・운영할 수 있다.
- 제7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 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기준·절차, 전담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(이하 "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・운영할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1. 핵심자원의 가격
 - 2. 핵심자원의 비축물량, 재고, 수급 현황・전망 및 수출량・수입량
 - 3.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·부품·제품의 재고, 수급 현황과 전망
 - 4. 핵심자원의 공급원,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
 - 5.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광산 현황
 - 6. 핵심자원의 해외 공급망 관련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의 핵심자원 재고, 수급 현황과 전망, 공급원,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(해당 공급기관 또는 수요기관에 대한 공급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한다)
 - 7.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)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,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·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

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

- **제10조(국가자원안보의 진단・평가)**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・평가를 하여야 한다.
 - 1.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
 - 2.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
 - 3.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
 - 4.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
 - 5. 그 밖에 자원안보 진단 평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·평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·평가의 주기,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공급망 점검・분석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・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 · 분석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·분석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

- 제12조(핵심자원의 개발・구매・조달 등) ①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・구매・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개발·구매·조달하거나 공급망을 구축·운영하는 때에는 공급원의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자원안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의 개발·구매·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·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공급기관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시설의 설치・확충
- 2.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의 인수
- 3.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제14조(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(이하 "공급국가"라 한다)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비축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,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(이하 "비축의무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핵심자원의 품목·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⑤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 핵심자원·비축물량·비축사유·비축기간, 제3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·실태보고 및 제5항에 따른 비축의무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16조(핵심자원의 비축계획)**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(이하 "비축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비축목표에 관한 사항
 - 2. 비축할 핵심자원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
 - 3.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④ 다른 법률에서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자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⑤ 그 밖에 비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생산·가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(이하 "비상동원광산"이라 한다)을 지정할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광업법」에 따른 채굴권자·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비상동원광산의 유지·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재자원화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 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,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(이하 "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"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자원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·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공급기반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공급기반시설(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을 설치·확충·유지·관리하는 공급기관(이하 "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"이라 한다)은 해당 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예방·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기반시설의 설치·확충·유지·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원안보를 위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·확충·유지·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(핵심공급기관의 지정·관리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·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핵심자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과 국민경제적 중요성
 - 2.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공급량
 - 3. 해당 공급기관의 매출규모
 - 4. 그 밖에 공급망 유지・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(이하 "핵심공급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1. 국내외 공급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중대한 수급 차질
 - 2. 국내외 가격의 급격한 변동
 - 3.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,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핵심수요기관의 지정·관리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·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핵심자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과 국민경제적 중요성

- 2.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 수요량
- 3. 해당 수요기관의 매출규모
- 4. 그 밖에 공급망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수요기관(이하 "핵심수요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1. 국내외 수요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중대한 수급 차질
- 2. 국내외 가격의 급격한 변동
- 3.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,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

제1절 위기대응체계

- 제23조(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 -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원인분석,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(이하 "대책본부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대책본부의 장(이하 "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, 대책본부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. 이 경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.
 - ④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, 이 장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활동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⑥ 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급기관의 장 및 핵심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원안보위기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⑦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25조(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)**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(이하 "국가 위기대응 매뉴얼"이라 한다)을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(이하 "기관 위기대응 매뉴얼"이라 한다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·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·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대응훈련 실시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(이하 "대응훈련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훈련을 받아야 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절 수급관리 긴급대응

- 제27조(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에서 핵심자원을 개발하거나 확보한 공급기관의 장 에게 그가 개발 또는 확보한 핵심자원(이하 "해외개발핵심자원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비축자원의 방출·사용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·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비축의무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방출・사용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・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핵심자원의 생산・가공을 개시・확대하거나 생산・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·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는 경우「광업법」제42조제1항(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「광업법」제43조제2항(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채굴권자·조광권자가「광업법」제43조제1항 각 호(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채굴권자·조광권자 또는 운영자가 입은 손실을 보 상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생산·가공의 개시·확대, 국내 판매의 절차·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(수급안정을 위한 조치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・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.
 - 1. 지역별 주요 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
 - 2. 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및 조업
 - 3. 핵심자원의 도입 수출입 및 위탁가공
 - 4. 공급기관 상호 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
 - 5. 핵심자원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
 - 6. 핵심자원의 배급
 - 7. 핵심자원의 양도・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
 - 8. 핵심자원 사용의 시기·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9.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한다.
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른 해제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(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공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최고액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.
 -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

- 제32조(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33조(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2항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8조의3, 제8조의4, 제10조의6 및 제10조의14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
 - 1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・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
 - 2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
 - 3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
 - 4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2조제9호의3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자
 - 5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2조제9호의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
 - 6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2조제9호의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여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34조(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) ①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·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 - ② 공무원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등 관계법령이나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사규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- 제35조(부과금의 감면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・판매 부과금,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・판매 부과금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64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・판매 부과금, 「광업법」제87조제1항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관세청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·물품에 대하여 「관세법」에 따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.

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

제36조(국제협력)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자원안보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
- 2. 자원안보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 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
- 3. 자원안보 관련 공동 정책 조사 연구 등 국제협력
- 4. 자원안보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협력
- 5.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・단체・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7조(연구개발)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·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수 있다.

- 1.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
- 2.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
- 3.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·보급·확산
- 4.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
-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·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8조(인력양성 및 교육·홍보)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
- 2. 자원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
- 3.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
-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장 보칙

- 제39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0조(비밀준수의 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혐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
- 2.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
- 3.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
- 4.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

제41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
- 2.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 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

제8장 벌칙

제4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제45조제2호의 자, 같은 법 제45조제 9호의 자,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66조제2항제1호의 자 또는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54조제1항제 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)
- 2.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- 3.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- 4.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제45조제3호의 자, 같은 법 제46조 제5호의 자,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66조제2항제2호의 자,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9호의 자, 같은 법 제68조제17호의 자,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50조제15호의 자 또는「석탄산업법」제4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)
- 5.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한 자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제45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개발핵심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(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제24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)
- 2.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3.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
- 4.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물량을 처분한 자

제4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4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제외한다.

- 1. 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
- 2.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3.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
- 4.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
- 5.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・관리하지 아니한 자
- 6.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- 7.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
- 8.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제20196호,2024. 2. 6.>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